

55092 061-302-8811

민원서류	
접수번호: 2019년 09월 09일	처리번호: 2019년 09월 09일
접수일시: 2019. 10. 04.	처리일시: 2019. 10. 04.
단속회: 2019. 10. 04. ()	처리회: 2019. 10. 04. ()
처리인: 김재용	처리인: 김재용
경상남도	경상남도

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2019. 09. 09 ~ 09. 19 <4202m>

제출인	주 소: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-2	전화번호: 061-362-8911	사업자등록번호: 408-81-29118
건축물	보병 초군1생활관 등 4개소 지정폐기물 철거	위 치: 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황성리)	
	연면적(m2): -	적입기간: 2019-08-08 ~ 2019-12-20	
석면건축자재 [길이(m) · 면적(m2) · 부피(m3)]:		11,982.07	M2
대표자: 김재용		사업자등록번호: 418-81-35806	

측정기관	주소: 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7, 2층 201호 (전화번호: 063-245-2501)		
측정일시	2019년 09월 09일		

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(f/cc)	검출석면
1 #1	부지경계선	0.002	기준치이하
2 #2	부지경계선	0.001	기준치이하
3 #3	부지경계선	-	불검출
4 #4	부지경계선	-	불검출
5 #1	위생시설주변	0.006	기준치이하
6 #1	폐기물반출구	0.002	기준치이하
7 #1	응암기출구	0.004	기준치이하
8 #2	응암기출구	0.005	기준치이하
9 #3	응암기출구	0.003	기준치이하
10 #4	응암기출구	0.002	기준치이하
11 #5	응암기출구	0.004	기준치이하

측정 지정 위치(도식도) 별첨1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09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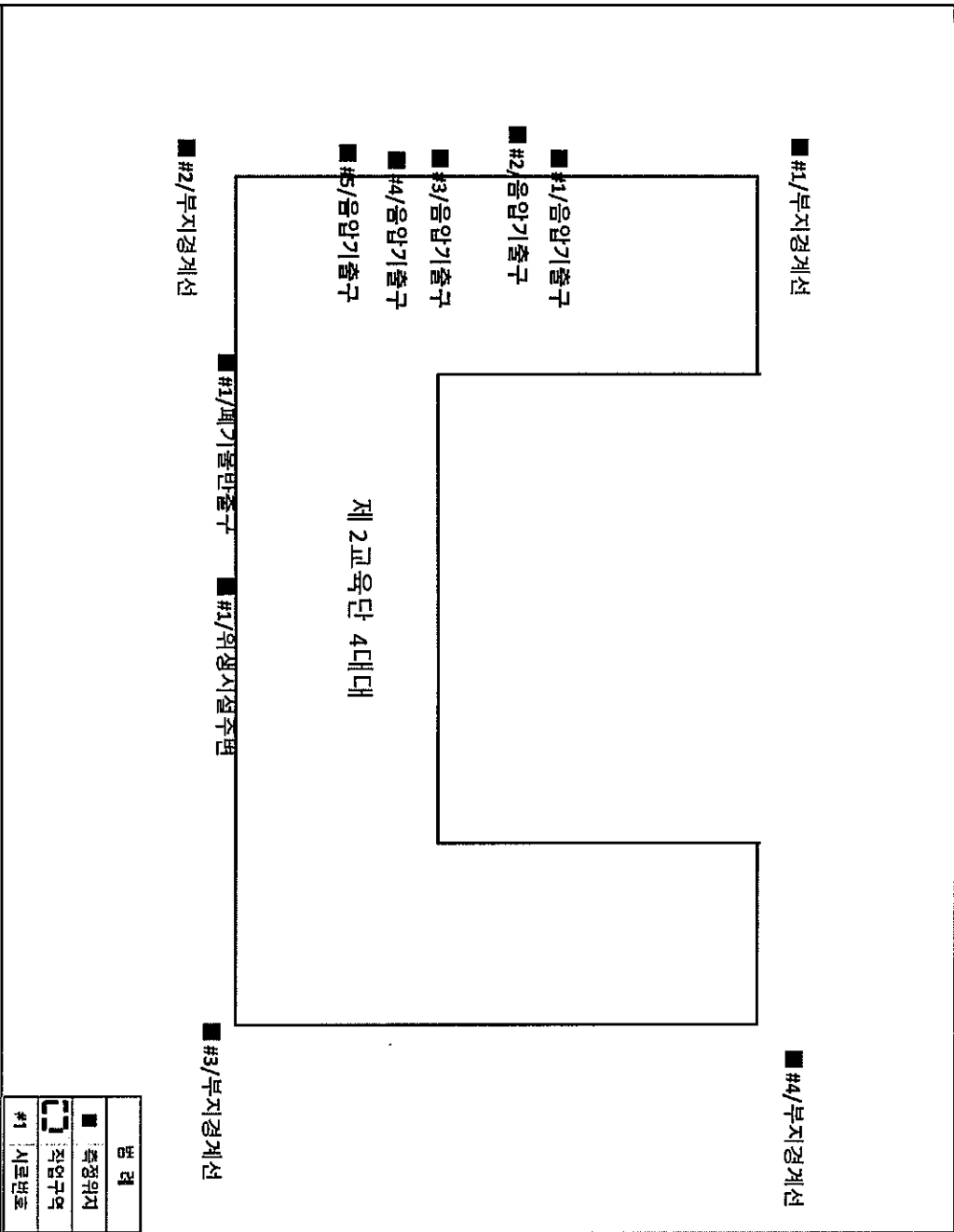
제출인: ㈜남호토건
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

「별첨1」

추정장소	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학성리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

[개별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1]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	
작업종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	
	위생설비입구	전수(1개 이상)	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	
				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대상 건물주변 5m 이내 - 음압기설치/부지경계선이 건물5M이내시 제외
음압기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	- 음압기는 배출능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해야 함		
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		

범례	■	축경위차
	□	작업구역
#1	—	시료번호

분석결과표

1. 개요

발주 또는 의뢰자	(주)남호토건	
주 소	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-2	
시 료 채 취 장 소	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화성리)	
당해 현장 조사일	2019년 09월 09일	
시 료 분석 일자	2019년 09월 09일	
분석보고서 일련번호	gum 9/9 비1	

2. 분석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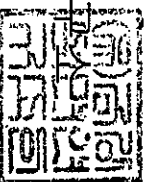
： 분석방법： 위상차현미경(PCM) 검증

NO	채취위치	시료명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 ³)	초과여부
1	부지경계선	#1	180	14	0.002	기준치이하
2	부지경계선	#2	180	14	0.001	기준치이하
3	부지경계선	#3	180	14	-	불검출
4	부지경계선	#4	180	14	-	불검출
5	위생시설주변	#1	30	14	0.006	기준치이하
6	폐기물반출구	#1	30	14	0.002	기준치이하
7	음압기출구	#1	30	14	0.004	기준치이하
8	음압기출구	#2	30	14	0.005	기준치이하
9	음압기출구	#3	30	14	0.003	기준치이하
10	음압기출구	#4	30	14	0.002	기준치이하
11	음압기출구	#5	30	14	0.004	기준치이하

※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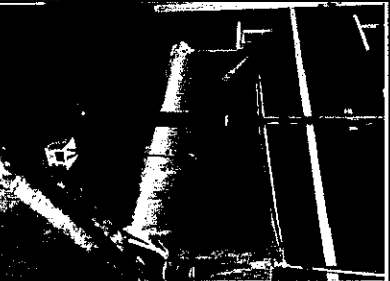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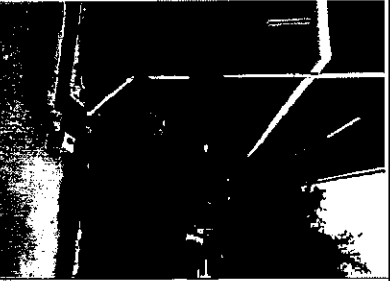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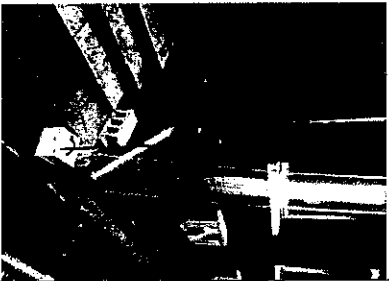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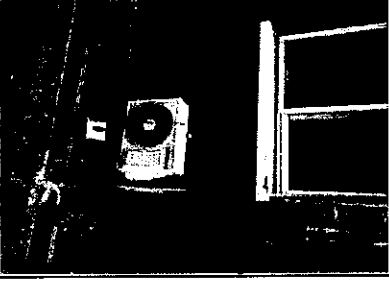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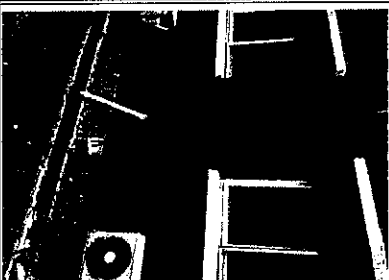

- 비산정도기준： 0.01개/cm³ 이하
- 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지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하되,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 유량을 조정함.
- 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시 중요가항.
- * 본 분석자료는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“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”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2012-7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합니다.

(유)금강석면연



▣ 비산시료 채취 사진대지

시료채취일자	2019년 09월 09일	시료채취개수	11	EA
현 장 주 소	전남 장성군 태창로 428(삼서면 학성리)			

채취위치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
시료번호	#1	#2	#3	#4
결 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불검출	불검출
사진대지				
채취위치	위생시설주변	폐기물반출구	음양기출구	음양기출구
시료번호	#1	#1	#1	#2
결 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
사진대지				
채취위치	음양기출구	음양기출구	음양기출구	
시료번호	#3	#4	#5	
결 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
사진대지				

※ 석면조사기관 고용노동부 지정서

제2011-120009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(유) 금강석면연구소		
소재지	(561-223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-81번지 상가2층 205호		
대표자성명	김계용		
지정사항	총	대행(지정)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	대행(지정)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한	한계	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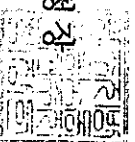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
2011. 9. 9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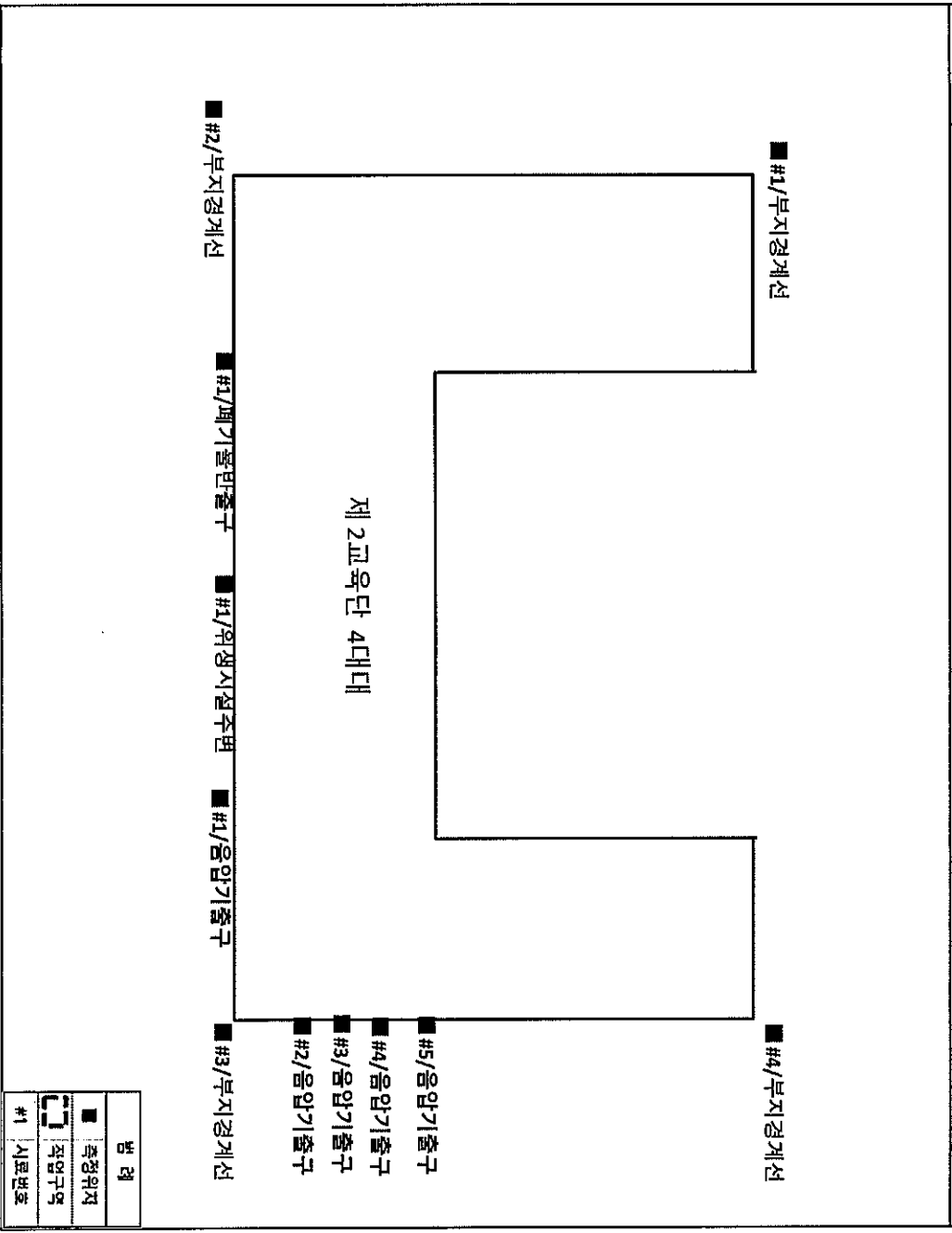
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검정번호
질서일

제출인	상호: 워남호토건	사업등록번호:	408-81-29118	
	주소: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-2		(전화번호: 061-362-8911)	
건축물	보병 초군1생활관 등 4개소 지정폐기물 철거	위 치:	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학성리)	
	연면적(m ²):	-	M ²	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 · 면적(m ²) · 부피(m ³)]:	11,982.07 M ²		
대표자: 김재용		사업등록번호: 418-81-35806		
측정기관	주소: 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7, 2층 201호 (전화번호: 063-245-2501)			
측정일시	2019년 09월 10일			
측정결과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(f/cc)	검출석면
	1 #1	부지경계선	0.004	기준치이하
	2 #2	부지경계선	0.003	기준치이하
	3 #3	부지경계선	0.002	기준치이하
	4 #4	부지경계선	0.003	기준치이하
	5 #1	위생시설주변	0.005	기준치이하
	6 #1	폐기물반출구	-	불검출
	7 #1	응암기출구	0.002	기준치이하
	8 #2	응암기출구	0.003	기준치이하
	9 #3	응암기출구	0.003	기준치이하
	10 #4	응암기출구	0.0050	기준치이하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 별첨1				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				
제출인: 워남호토건		2019년 09월 10일  (인)		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				

「별첨1」

측정장소 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화성리)



「개별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」의 시료채취 지점 1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작업종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
			위생설비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
	작업장 주변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물주변 5m 이내 - 음압기설치/부지경계선이 건물5M이내시 제외
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능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	
			폐기물 반출구 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

분석 결과표

1. 개요

발주 또는 의뢰자	㈜남호토건		
주 소	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-2		
시 료 체 취 장 소	전남 정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학성리)		
당해 현장 조사일	2019년 09월 10일		
시 료 분석 일자	2019년 09월 10일		
분석보고서 일련번호	gum 9/10 비1		

2. 분석 결과

： 분석방법： 위상차현미경(PCM) 검측

NO	채취위치	시료명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3)	초과여부
1	부지경계선	#1	180	14	0.004	기준치이하
2	부지경계선	#2	180	14	0.003	기준치이하
3	부지경계선	#3	180	14	0.002	기준치이하
4	부지경계선	#4	180	14	0.003	기준치이하
5	위생시설주변	#1	30	14	0.005	기준치이하
6	폐기물반출구	#1	30	14	-	불검출
7	응암기출구	#1	30	14	0.002	기준치이하
8	응암기출구	#2	30	14	0.003	기준치이하
9	응암기출구	#3	30	14	0.003	기준치이하
10	응암기출구	#4	30	14	0.005	기준치이하
					-	-
					-	-

※ 참고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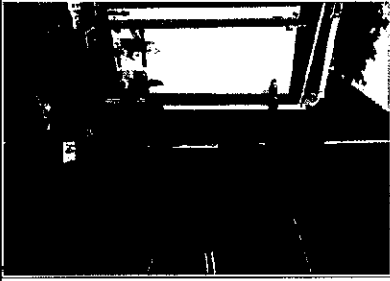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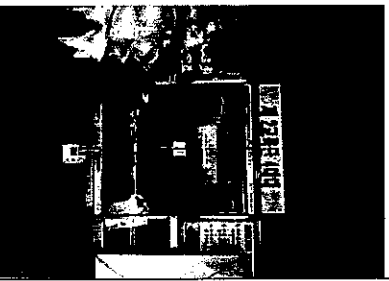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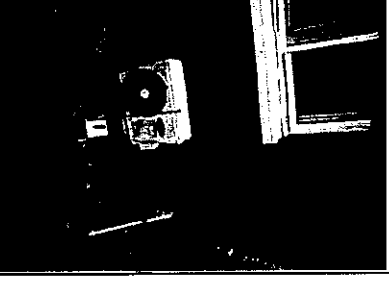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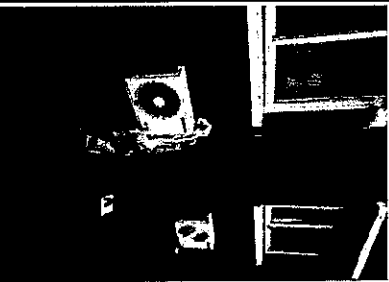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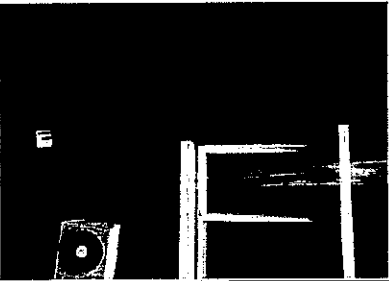
- 비산정도기준： 0.01개/cm3 이하
- 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하되,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 유량을 조정함.
- 위생설비, 응암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시 종료기함.
- * 본 분석자료는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“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”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2012-7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합니다.

(유)금강석면연



▣ 비산시료 채취 사전대지

시료채취일자	2019년 09월 10일	시료채취개수	10 EA
현 장 주 소	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학성리)		

채취위치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
시료번호	#1	#2	#3	#4
결 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
사전대지				
채취위치	위생시설주변	폐기물반출구	음압기출구	음압기출구
시료번호	#1	#1	#1	#2
결 과	기준치이하	불검출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
사전대지				
채취위치	음압기출구	음압기출구		
시료번호	#3	#4		
결 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	
사전대지				

※ 석면조사기관 고용노동부 지정서

제2011-120009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(유) 금강석면연구소		
소재지	(561-223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3가 747-81번지 상가2층 205호		
대표자성명	김재용	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	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1. 9. 9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



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진수번호
질서일

상호: 워남호토건	사업자등록번호: 408-81-29118
주소: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-2 (전화번호: 061-362-8911)	

보병 초군1생활관 등 4개소 지정폐기물 철거	위치: 전남 장성군 태정로 428(삼서면 황성리)
연면적(m2): -	작업기간: 2019-08-08 ~ 2019-12-20

건축물 석면건축자재[길이(m) · 면적(m2) · 부피(m3)]: 11,982.07 M2	대표자: 김재용 사업자등록번호: 418-81-35806
---	---

측정기관: **주소: 전주시 덕진구 우이7길 7, 2층 201호** (전화번호: **063-245-2501**)

측정일시		2019년 09월 11일	
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결과(f/cc)	검출석면
1 #1	부지경계선	0.003	기준치이하
2 #2	부지경계선	0.002	기준치이하
3 #3	부지경계선	0.004	기준치이하
4 #4	부지경계선	0.005	기준치이하
5 #1	위생시설주변	0.006	기준치이하
6 #1	폐기물반출구	0.003	기준치이하
7 #1	응입기출구	0.001	기준치이하
8 #2	응입기출구	0.002	기준치이하
9 #3	응입기출구	0.004	기준치이하
10 #4	응입기출구	0.005	기준치이하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 별첨 1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09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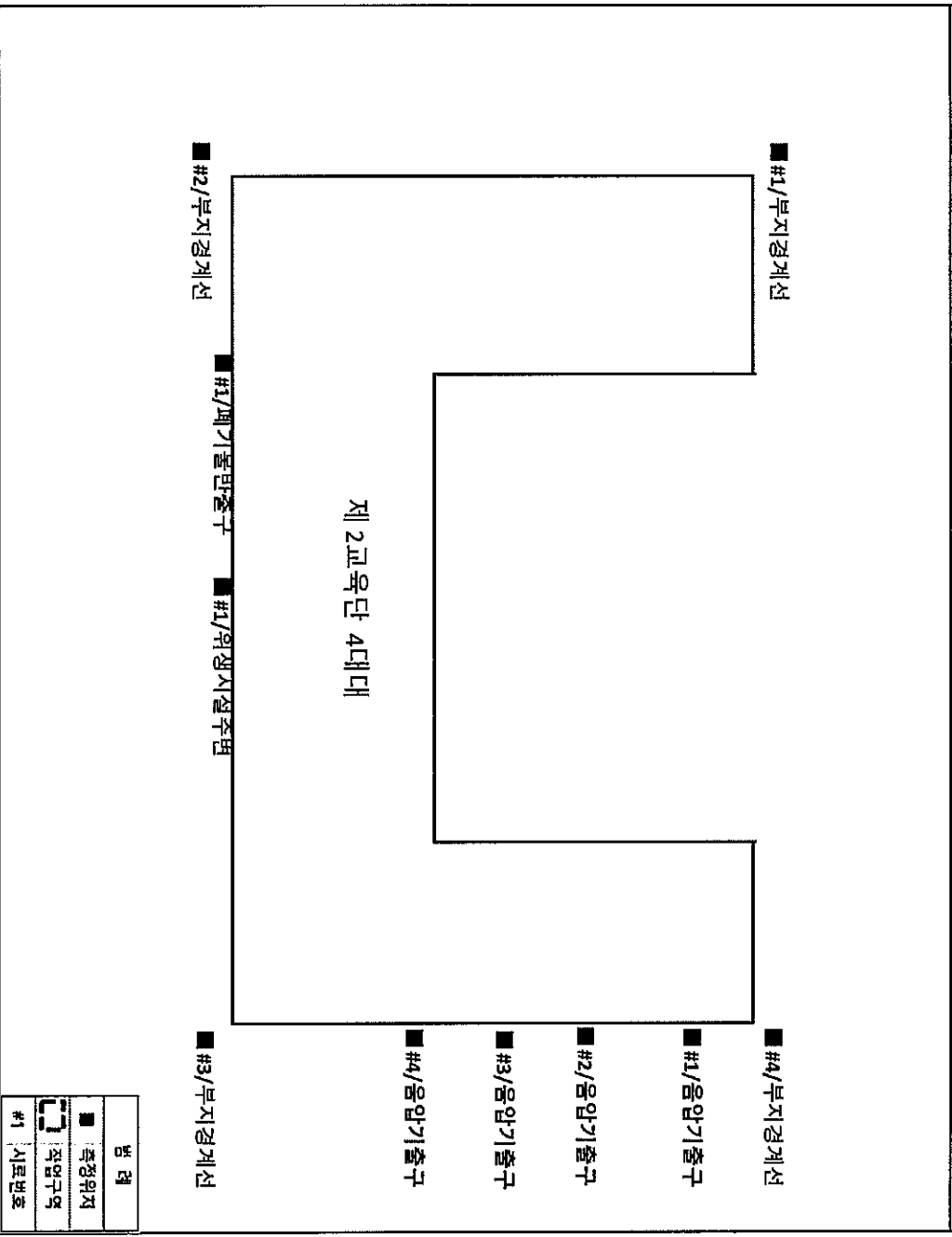
제출인: **워남호토건** (인)
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

「별첨1」

축정장소 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화성리)



[개별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]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작업 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
			위생설비입구 전수(1개이상)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
	작업장 주변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
		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
음압기	전수(1개이상)	1개 이상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		폐기물 반출구 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

 ■ 축정위치
 ■ 작업구역
 #1 시료번호

분석 결과표

1. 개요

발주 또는 의뢰자	(유)금강석면연		
주 소	전리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-2		
시료 채취 장소	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황성리)		
당해 현장 조사일	2019년 09월 11일		
시료 분석 일자	2019년 09월 11일		
분석보고서 일련번호	gum 9/11 비1		

2. 분석 결과

： 분석방법： 위상차현미경(PCM) 검증

NO	채취위치	시료명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 ³)	초과여부
1	부지경계선	#1	180	14	0.003	기준치이하
2	부지경계선	#2	180	14	0.002	기준치이하
3	부지경계선	#3	180	14	0.004	기준치이하
4	부지경계선	#4	180	14	0.005	기준치이하
5	위생시설주변	#1	30	14	0.006	기준치이하
6	폐기물반출구	#1	30	14	0.003	기준치이하
7	음압기출구	#1	30	14	0.001	기준치이하
8	음압기출구	#2	30	14	0.002	기준치이하
9	음압기출구	#3	30	14	0.004	기준치이하
10	음압기출구	#4	30	14	0.005	기준치이하
					-	-
					-	-

※ 참고











- 비산점도기준： 0.01개/cm³ 이하
- 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지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하되,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 유량을 조정함.
- 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시설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시 종료기함.
- * 본 분석지료는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“석면 해체·채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”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2012-7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합니다.

(유)금강석면연



▣ 비산시료 채취 사진대지

시료채취일자	2019년 09월 11일	시료채취개수	10 EA
현 장 주 소	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학성리)		

채취위치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
시료번호	#1	#2	#3	#4
결 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
사진대지				
채취위치	위생시설주변	폐기물반출구	음압기출구	음압기출구
시료번호	#1	#1	#1	#2
결 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
사진대지				
채취위치	음압기출구	음압기출구		
시료번호	#3	#4		
결 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	
사진대지				

※ 석면조사기관 고용노동부 지정서

제2011-120009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(유) 금강석면연구소		
소재지	(561-223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-81번지 상가2층 205호		
대표자성명	김재용	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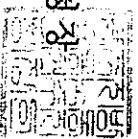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1. 9. 9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



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검수번호
검수일

제출인	성호: ㈜남호토건	사업자등록번호: 408-81-29118
	주소: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-2 (전화번호: 061-362-8911)	
건축물	보병 초군1생활관 등 4개소 지정폐기물 철거	위 치: 전남 장성군 대청로 428(삼서면 황성리)
	연면적(m2): - M2	착입기간: 2019-08-08 ~ 2019-12-20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 · 면적(m2) · 부피(m3)]: 11,982.07 M2	

대표자: 김재용	사업자등록번호: 418-81-35806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측정기관 주소: 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7, 2층 201호 (전화번호: 063-245-2501)

측정일시 2019년 09월 16일

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(f/cc)	검출석면
측정결과	1	#1 부지경계선	-	불검출
	2	#2 부지경계선	-	불검출
	3	#3 부지경계선	0.001	기준치이하
	4	#4 부지경계선	0.002	기준치이하
	5	#1 위생시설주변	0.003	기준치이하
	6	#1 폐기물반출구	0.002	기준치이하
	7	#2 폐기물반출구	0.004	기준치이하
	8	#2 음압기출구	0.005	기준치이하
	9	#3 음압기출구	0.003	기준치이하
	10	#4 음압기출구	0.005	기준치이하
	11	#5 음압기출구	0.004	기준치이하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 별첨1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09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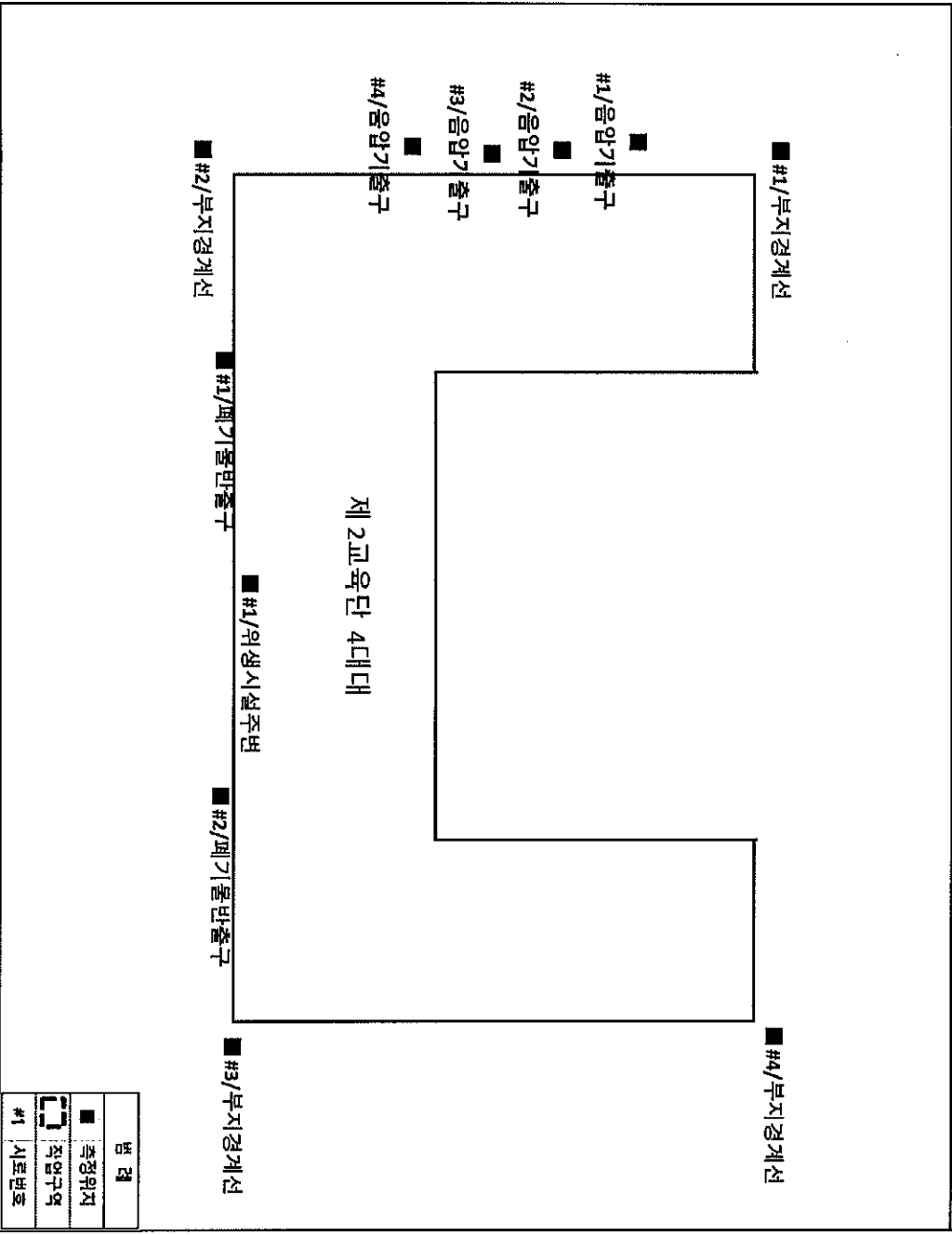
제출인: ㈜남호토건
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

「별첨1」

측정장소 전남 장성군 태정로 428(삼서면 황성리)



범 경
■ 측정위치
□ 작업구역
#1 시료번호

[개별 석면 해체 · 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]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작업장 주변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
		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
	음압기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
		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
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	
		전수(1개 이상)		

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
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- 대상 건물 주변 5m 이내
- 음압기 설치/부지경계선이 건물5M이내 시 제외
- 음압기는 배출능도를 평가하기 적절하게 설치해야 함

분석결과표

1. 개요

발주 또는 의뢰자	(주)남호토건	
주 소	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7-2	
시 료 채 취 장 소	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화성리)	
당해 현장 조사일	2019년 09월 16일	
시 료 분석 일자	2019년 09월 16일	
분석보고서 일련번호	gum 9/16 비1	

2. 분석결과

： 분석방법 : 위상차현미경(PCM) 검측

NO	채취위치	시료명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 ³)	초과여부
1	부지경계선	#1	180	14	-	불검출
2	부지경계선	#2	180	14	-	불검출
3	부지경계선	#3	180	14	0.001	기준치이하
4	부지경계선	#4	180	14	0.002	기준치이하
5	위생시설주변	#1	30	14	0.003	기준치이하
6	폐기물반출구	#1	30	14	0.002	기준치이하
7	폐기물반출구	#2	30	14	0.004	기준치이하
8	음압기출구	#2	30	14	0.005	기준치이하
9	음압기출구	#3	30	14	0.003	기준치이하
10	음압기출구	#4	30	14	0.005	기준치이하
11	음압기출구	#5	30	14	0.004	기준치이하
					-	-

※ 참고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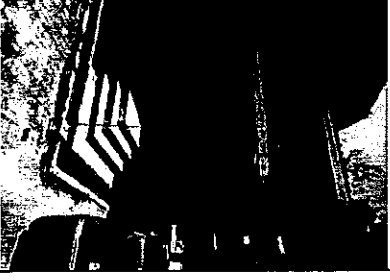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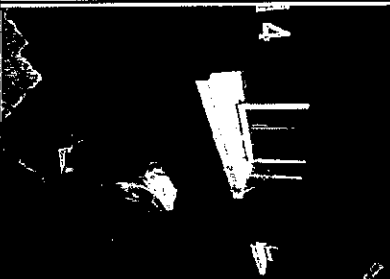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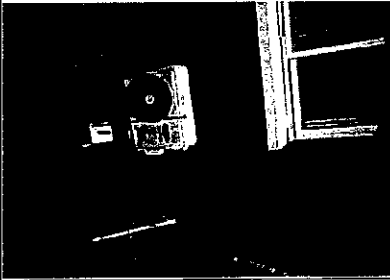
- 비산정도기준 : 0.01개/cm³ 이하
- 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지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하되,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 유량을 조정함.
- 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400L 이상시 중요가함.
- * 본 분석자료는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“석면 해체·채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” 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2012-7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합니다.

(유)금강석면연



▣ 비산시료 채취 사진대지

시료채취일자	2019년 09월 16일	시료채취개수	11	EA
현 장 주 소	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학성리)			

채취위치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	부지경계선
시료번호	#1	#2	#3	#4
결과	불검출	불검출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
사진대지				
채취위치	위생시설주변	폐기물반출구	폐기물반출구	음압기출구
시료번호	#1	#1	#2	#2
결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
사진대지				
채취위치	음압기출구	음압기출구	음압기출구	
시료번호	#3	#4	#5	
결과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기준치이하	
사진대지				

※ 석면조사기관 고용노동부 지정서

제2011-120009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(유) 금강석면연구소		
소재지	(561-223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-81번지 상가2층 205호		
대표자성명	김재용	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
	관할 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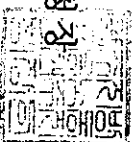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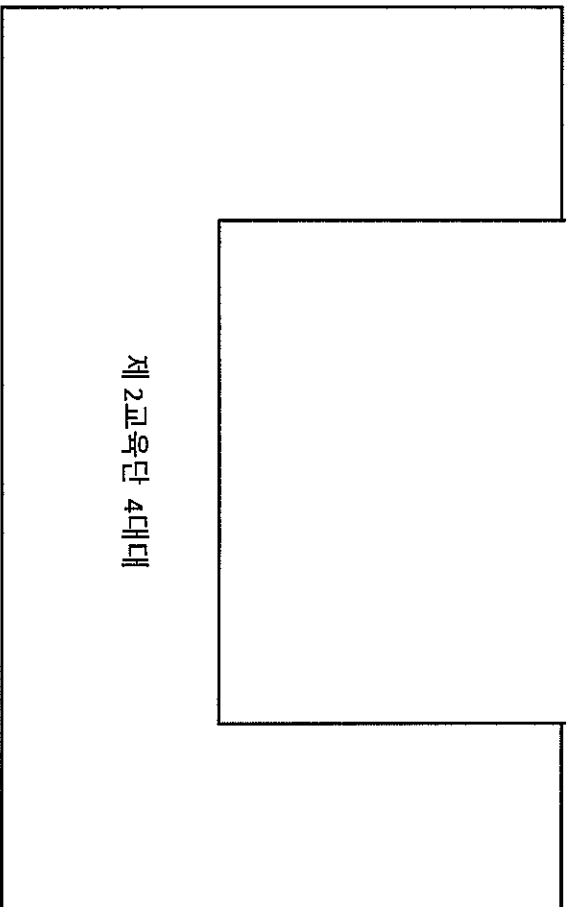
2011. 9. 9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



「별첨1」

추정장소 전남 장성군 태청로 428(삼서면 황성리)



■ #1/폐기물보관지점 ■ #2/폐기물보관지점 ■ #3/폐기물보관지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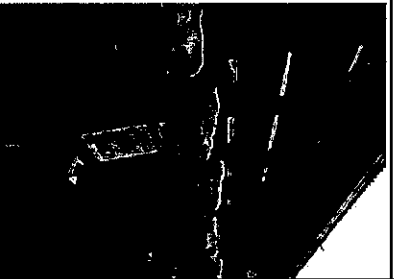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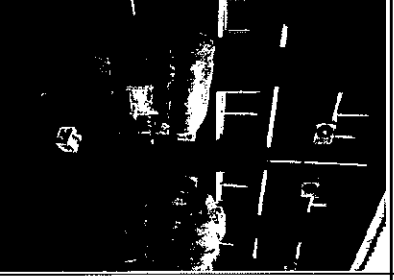
범 령
■ 추정위치
□ 작업구역
#4 시료번호

「개별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」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추정위치	비고
작업 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
		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
	작업장 주변	1개 이상	직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물주변 5m 이내 - 음압기 설치/부지경계선이 건물5M이내시 제외
음압기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능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	
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	

▣ 비산시료 채취 사진대지

시료채취일자	2019년 09월 17일	시료채취개수	3	EA
현 장 주 소	전남 장성군 태정로 428(삼서면 학성리)			

채취위치	폐기물보관지점	폐기물보관지점	폐기물보관지점	
시료번호	#1	#2	#3	
결 과	불검출	불검출	기준치이하	
사진대지				
채취위치				
시료번호				
결 과				
사진대지				
채취위치				
시료번호				
결 과				
사진대지				

※ 석면조사기관 고용노동부 지정서

제2011-120009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(유) 금강석면연구소		
소재지	(561-223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-81번지 상가2층 205호		
대표자성명	김재용	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
	관할 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	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1. 9. 9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

